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18호

2025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혁신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모집규모 : 10社 이상
공고기간 : 2025. 1. 20. (월) ~ 2025. 2. 19. (수), 12:00 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지원금액 : 최대 500백만원/社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민간투자 유치**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후속 매칭지원**으로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사업예산 :** 50억원(국비 100%) * 기업 당 최대 5억 원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12. 31.

❑ **선정규모 :** 10社 이상

❑ **지원대상 :** 농식품 全분야 벤처·창업기업

※ 상세 지원대상 요건은 [4.신청자격] 반드시 참고

* 단,「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중복수혜 불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대상, 별도공고 예정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031-8084-9556)

2 스케일업 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유망 창업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 규모

○ 기업당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5억 원, 10개社** 이상 지원

- 사업화자금은 기 투자 받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민간투자(3억원) : 사업화자금(3억원)', '민간투자(6) : 사업화자금(5)'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

○ **기업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임(VAT 별도)

< 사업비 구성 예시(단위: 백만 원) >

민간투자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500	715	**500**	72	143
	100%	**70%**	10%	20%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사업비 중 국고지원금은 2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 사업 추진절차

❶ 모집공고	▷	❷ 사업신청	▷	❸ 사전검토	▷	❹ 선정평가
모집공고 (농진원)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투자사 → 농진원)		투자계약, 신청적격 등 검토(농진원)		서류→현장→발표 (평가위원회)
1~2월		2월		2월		3월

▽

❽ 결과보고	◁	❼ 사업수행	◁	❻ 협약체결	◁	❺ 사업심의위원회
사업실적 보고 (선정기업 → 농진원)		스케일업 추진 (선정기업)		사업비 지급 (농진원 → 선정기업)		최종선정, 사업비 확정
12월		4~12월		4월		3월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모집(신청) 및 선발

❑ 모집(신청)기간 : '25. 1. 20.(월) ~ '25. 2. 19.(수) 12:00

❑ 모집규모 : 10社 이상

* 최종 지원규모는 사업심의회를 통해 농진원 협업 투자사(50%↑), 일반투자사(50%↓)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지원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예산 : 최대 500백만원/社

○ 사업화자금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민간투자(3억원) : 사업화자금(3억원)', '민간투자(6) : 사업화자금(5)'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

○ (온라인) **www.ascaleup.kr에서** 신청 및 접수(2025.01.31.(금)부터 가능)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기본정보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제출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 가점인정은 사업신청 時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함(마감일 이후 제출 미인정)

- (제출 후 수정) 마이페이지 클릭 → 페이지 하단 '수정' 클릭 →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수정은 접수 기간 내 제한 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

** 총 첨부파일 최대용량 5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함

❑ 선정평가 일정(안)

모집공고·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사업심의위원회	최종선정
농식품창업정보망, K-Startup 등	신청자격 검토 및 투자검증 (농진원, 검증위원단)	서류→현장→발표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사업비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선정기업 대상 별도 공지
1. 20. ~ 2. 19.	2월 중	3월 중	3월중	4월 중

* 평가 일정은 신청 자격 검토 결과 적격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신청기업 규모가 선정기업 규모의 2배 이하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

❑ 선정평가 방식 :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및 투자검증 후, 서류평가, 현장점검, 발표평가, 사업심의회 순으로 평가

○ **(사전검토)** 추천된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및 민간투자사의 투자적절성 등 검토

- (자격검토) 농식품 분야 해당여부, 창업업력, 벤처확인기업 여부, 필수 제출서류, 지원제한 해당여부 등 기본 요건 검토(내부검토)

검토내용		확인 내용
필수 자격 요건	농식품 분야 해당여부	‣ 한국표준사업분류표 기준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이거나, 이외에도 농업관련 융복합 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
	업력	‣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으로, **공고마감일 시점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벤처확인기업** * 벤처확인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필수제출서류	‣ 추천서/사업계획서/투자계약서/투자검토보고서/투자확인서류 등 * 농식품 분야 전문투자가사 아닌 일반 투자사의 경우,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등록서류
	기타 제한요건	‣ 창업기업의 법적 규제 여부(개인회생, 파산, 국가사업참여 제재 대상) 등

- (투자검증) 제출된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의 투자적절성 검증(검증위원단 구성*)

* 법률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3인 내외

○ **(선정평가)** 서류평가 → 현장점검 →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류평가)** 외부 평가위원 7인 이내 구성, 지원규모의 **2배수 선정**

사업계획(40)	성장가능성(40)	정책부합성(20)
·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사업계획의 구체성(15) · 예산계획의 합리성(10)	· 기업 성장 가능성(20) · 기술 역량 확보 가능성(20)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10) · 관련 산업기여도(10)

* 모집결과, 경쟁률이 2:1 이하인 경우는 서류평가 생략

- **(현장점검)** 창업기업이 제시한 **연구시설·장비, 인력, 생산설비** 등 **사실관계 검증** 및 **주목적사업 여부** 판단(사업담당자 또는 필요시 전문가 동행)

  * 점검결과, 부적합 기업은 지원대상 후보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외부 평가위원 7인 이내 구성, 지원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총점 60점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기업역량(35)	기술성(30)	사업성(35)
· 사업 추진역량(15) · 성과창출 가능성(15) · 추천사의 지원의지(5)	· 기술·제품의 우수성(1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0) · 기술역량 보유현황(10)	· 시장 확보 경쟁력(15) · 사업화전략의 구체성(10) · 산업적 기대효과(10)

* 창업기업 대표자 직접 발표 원칙, 투자사는 배석하여 부연설명

- **(가점사항)** 역대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이거나, 우수실적(매출액·투자유치) 기준 충족 등 최대 3점 가점부여

기준	가점	증빙	비고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첨단기술 포함)	1점	증빙 불필요	최대 2점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기업	1점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	1점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1점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2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전년도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기업	2점	투자확인서류	

※ 서류 및 발표평가의 평가위원회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함

○ (사업심의위원회)

- **(구성)**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발표평가 참여 평가위원 4인 이상 원칙)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업 **최종 선정하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업화자금 지급규모** 최종결정

  * 농식품 특정분야에 선정기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주의사항)

-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 선정 가능**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공고 및 평가 시행
- 발표평가 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투자사가 배석하여 예상성장성 및 추천사유 등을 부연설명

❑ 제출서류 ※ 민간투자사가 취합하여 직접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1. 추천서 1부**	서류 1 [양식 1]
	2. 투자사 증빙서류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 (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 증빙)	서류 2
	3. 사업계획서 1부	서류 3 [양식 2]
	4.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각 1부	서류 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 5 [양식 3]
	6. 기업 재무제표(2022년~2024년, 3개년) * 2024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3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서류 6
	7. 납세증명서(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서류 7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 ~ 2024년, 2개년) * 설립년도가 최근(2023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서류 8
	9.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서류 9
	10.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총 사업자등록내역] *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지분률 포함) 사본 - 총 사업자등록내역은 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증빙서류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10
(해당시) 필수서류	**11. 창업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제출 요망)	서류 11
	12.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12
	13.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서류 13
	14. (공정개선/용역비/시설장비) 수행(도입)계획서 1부	서류 14 [양식 4, 5]
(선택사항) 기타서류	**15.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서류 15
	16.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서류 16

4 신청자격

❑ 지원 상세요건

◇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농식품 ❹**벤처·창업기업**

* ❶~❹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❶ **(민간투자사)** 농진원과 협업하는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이거나,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中, 하나일 것

㉠ 소풍벤처스, 씨엔티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탭엔젤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더넥스트랩, 스타트업리서치

㉡ 롯데벤처스, CJ제일제당(스파크랩), 하이트진로, 농협, 유한킴벌리

㉢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 협업 인정 기간은 최근 2년 이내임

❷ **(투자)** 사업공고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❶**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일 것(확약금 제외)

* 고유계정형, 펀드형 등 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투자금 전액 100%** 인정함

❸ **(추천)** 민간투자사 **추천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는 **민간투자사가 직접 제출**하고, **발표평가** 시 민간투자사가 **배석**하여 성장성 및 추천사유 등을 **부연설명**(발표평가 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직접 발표** 원칙) ※ 추천서는 (양식1) 참고

< 민간투자사 추천권(T/O) >

① **농진원과 협업하는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 3개社**

②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 1개社**

※ 단, 연내 추천권 미소진시 차년도 이월 불가

❹ **(벤처·창업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이거나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확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확인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모집(신청) 마감일 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창업지원 정부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3]에 해당하는 사업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가점사항

❍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발표평가 시 최대 3점 부여

* 가점 총합이 3점 이상일 경우, 최대 3점으로 인정

기준	가점	증빙	비고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첨단기술 포함)	1점	증빙 불필요	최대 2점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기업	1점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	1점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1점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2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전년도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기업	2점	투자확인서류	

5 선정자의 의무

❏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 부분을 입금해야 하며, 현물 자부담 부분은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주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해 신청·접수 기간 중 보완요청 등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중복 수행 불가)

* **(주의)** 본 사업 협약체결 후 [참고 3]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협약은 해지되며 사업비는 전액 회수 처리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평가 및 현장점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회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회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일+6개월, 자부담) 제출 필수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6 선정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업 대상 별도 공지 예정

*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 선정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국고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및 사용 방법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 선정기업이 타인의 아이템 및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때, **선정기업은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책임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기준 등에 따름

7 문의처

부 서	메일주소	연락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투자지원팀	ecoterra@koat.or.kr	063-919-1411, 1413

* 공고된 자료(공고문 및 첨부서류 등)는 문의처의 답변보다 우선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함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table>
<tr><th>신청기업 구분</th><th colspan="3">상세 구분</th><th>창업여부</th></tr>
<tr><td rowspan="8">개인기업</td><td colspan="3">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td><td>창업 기본요건</td></tr>
<tr><td rowspan="2">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td><td colspan="2">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td><td>창업아님</td></tr>
<tr><td colspan="2">이종</td><td>창 업</td></tr>
<tr><td>기존 개인사업자
유지</td><td colspan="2">-</td><td>창업아님</td></tr>
<tr><td rowspan="5">기존 개인사업자
폐업</td><td>이종창업</td><td>-</td><td>창 업</td></tr>
<tr><td rowspan="4">동종창업</td><td>폐업 3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폐업 3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부도/파산 – 2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부도/파산 – 2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td><td colspan="2">-</td><td>창 업</td></tr>
<tr><td rowspan="10">법인기업</td><td colspan="3">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td><td>창업 기본요건</td></tr>
<tr><td rowspan="6">기존 개인사업자
폐업</td><td>이종창업</td><td>-</td><td>창 업</td></tr>
<tr><td rowspan="4">동종창업</td><td>폐업 3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폐업 3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부도/파산 – 2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부도/파산 – 2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동종전환</td><td>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td><td>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td></tr>
<tr><td rowspan="3">기존 개인사업자
유지</td><td>이종창업</td><td>-</td><td>창 업</td></tr>
<tr><td rowspan="2">동종창업</td><td>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td><td>창업아님</td></tr>
<tr><td>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td><td>창 업</td></tr>
<tr><td>자회사 여부</td><td colspan="2">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td><td>창업아님</td></tr>
<tr><td>과점주주 여부</td><td colspan="2">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td><td>창업아님</td></tr>
<tr><td rowspan="2">회사형태 변경</td><td colspan="2">동종유지</td><td>창업아님</td></tr>
<tr><td colspan="2">이종</td><td>창 업</td></tr>
</table>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사업비 예산 비목

비목		세부 사항	비목 정의
직접비	인건비	직원 인건비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 및 기존 직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합산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직원기준 : 사업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협약 종료일이내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X 참여기간(B) X 참여율(C)
	재료비	재료비 지원	▸ 사업계획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 구입비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의 소모품의 경우 : 비품, 사무용품, 시험용기, 공구 등 가능 *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의 합산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시설 장비비	사업화에 직접적인 기계장치	▸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기술개발, 성능개선,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기구·장비·설비, S/W등 구입·구축 및 임차료 비용 * 사업계획서 상 제품제작의 필요 연관성이 높고 사업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득한 경우에만 구매 가능 * 사무용 집기, 가구, PC 불가 * 세부사용계획 제출
	공정 개선비	공정개선 개발 및 설계 비용	▸ 기 구축된 공정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업계획서상 주력제품의 본격 시장진출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개발 비용 * 세부사용계획 제출
	용역비	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기술연구개발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할 수 없는 활동(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기술연구개발용역 등)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급 * 사업 결과 달성에 필요한 부분 용역에 한정 * 세부사용계획 제출
간접비	지급 수수료	전문가 컨설팅 기자재 임차 시험분석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홍보자료 번역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식재산권확보 교육훈련비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체류비, 교통비 제외),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기자재 임차비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유지 관련 비용 ▸ 창업기업 임직원의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비용
	임차비	사무실 및 공장 임차	▸ 창업기업 사무실(본점,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장(제조가공) 임대료 * 총사업비의 **20%(60백만원)**를 초과할수 없음
	광고 선전비	홈페이지 구축 포장지·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TV·일간지 등의 직접 광고홍보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회계 정산비	사업비 회계정산	▸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월별 감사 및 회계정산 수수료 * 국고지원금의 1%로 책정
	기 타	기타	▸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항목 중 위의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활용 가능 ▸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불가 항목 별도 기재

* 해당사항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매뉴얼을 따르며,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중복수혜 불가 정부 지원사업 목록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사 업 명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 첨단기술)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중심 대학사업
		생애최초청년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중복수혜(협약)는 불가함

** 위의 사업 외 타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중기부 통합공고 기준, 24년 12월) 수혜기업인 경우, 문의 후 사업지원

참고 4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1. 추천서 1부**	서류 1 [양식 1]
	2. 투자사 증빙서류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 (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 증빙)	서류 2
	3. 사업계획서 1부	서류 3 [양식 2]
	4.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각 1부	서류 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 5 [양식 3]
	6. 기업 재무제표(2022년~2024년, 3개년) * 2024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3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서류 6
	7. 납세증명서(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서류 7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4년, 2개년) * 설립년도가 최근(2023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서류 8
	9.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서류 9
	10.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총 사업자등록내역] *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지분률 포함) 사본 - 총 사업자등록내역은 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증빙서류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10
(해당시) 필수서류	**11. 창업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제출 요망)	서류 11
	12.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12
	13.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서류 13
	14. (공정개선/용역비/시설장비) 수행(도입)계획서 1부	서류 14 [양식 4,5]
(선택사항) 기타서류	**15.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서류 15
	16.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서류 16

참고 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① 국세청홈텍스접속 → ② 로그인(대표자명으로) → ③ 민원증명 → ④ 사실증명 신청 → ⑤ 창업이력이 없는 경우 발급 → ⑥ 창업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 : 기간은 전체로 설정

참고 6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작성 요령	**[추천서]** 1. 민간투자사가 직접 작성 2. 투자현황 : 민간투자사의 신청기업에 대한 투자현황 작성 3. 신청기업 (기업명)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명 동일 4. 추천서는 반드시 서명 포함 5. 분량 : 양식을 유지하여 추천서 및 사유서를 각 한 장씩에 맞춰 작성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이란, 민간투자사가 아닌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벤처·창업기업임 1.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 2. 업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분량을 조절하여 기술(항목 삭제 불가) 3. 사업화 과제명 : 제안 사업화 아이템을 간략하게 표현 4. 파란색 안내문구 및 안내박스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후 안내박스 가이드는 삭제하여 제출 5.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되, 특히 시장 및 기술동향, 선행기술 및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시 객관적인 데이터 및 출처 제시 요망 6. 제출 파일 중 사업계획서 첫 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포함 7. 사업계획서 내의 예산계획은 선정 이후 사업운영에 사용되므로 [참고2]의 예산비목 및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 시에 신중히 작성 8. **사업계획서의 작성분량 : 40페이지 내외**(기타 참고자료 제외)
유의 사항	1. 서류 작성 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람 2.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3. 접수된 서류와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양식 1] 민간투자사 추천서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신청기업 추천서

민간투자사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H.P	
				이메일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H.P	
				이메일	
	주소	본사			
		공장			
		연구소			

가점 해당사항 (최대 3점)	□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첨단기술 포함)(1점)	□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1점)
	□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기업(1점)	□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2점)
	□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1점)	□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기업(2점)

투자현황	구분		투자금(백만원)	비고
	직접투자	투자완료		
		예정(확약포함)		
	후속투자	투자완료		
		예정(확약포함)		
	합계	투자완료		
		예정(확약포함)		

주주현황	투자 前				투자 後			
	구분	주주명	지분율	국적	구분	주주명	지분율	국적
	신청기업				신청기업			
	기타				기타			
					추천사			

특이사항	○ *투자현황 및 계획에 관련한 특이사항* ○ *회사 구조, 기업경영에 관련한 특이사항 등*

'25년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공고문에 따라, 신청기준을 준수하여 신청기업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추천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 심사역 : (인)

민간투자사 대표자 : (직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신청기업 추천사유

(1페이지 이내 작성)

1. 창업 아이템, 기술, 제품 소개

○ *경쟁력, 우수성, 차별성 등*

○

○

2. 사업화 추진 전략

○ *시장성, 시장진출전략, 마케팅 전략 등*

○

○

3. 성장성 등 투자 및 추천사유

○

○

○

4. 본 사업 관련 민간투자금 활용 계획

○ *민간투자금-정부지원금 매칭 활용*

○

○

5. 민간투자사의 향후 지원계획

○ *후속투자, M&A, IPO 계획 등 포함*

○

○

[양식 2] 사업계획서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자가진단표

☐ 해당 시 ☑ 체크

		가점 대상 (체크 시 해당 증빙 제출 필수!)		☑
1	농진원 사업참여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첨단기술 포함)	농진원 확인	☐
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기업		☐
3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		☐
4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 미래식단, 프론티어랩스, 자연기반, NHarvest X		☐
5	매출액	'24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6	민간 투자	'24년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	투자확인 서류	☐

	지원 제외 대상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	☑
1	신청한 사업 아이템은 농산업과 관련성이 없다.	☐
2	창업한 후 모집 마감일 기준 7년 이상 경과 하였으며, 벤처확인기업이 아니다. (2018.2.~2025.2.에 창업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지 않은 기업으로, 공고마감일 시점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중 회사성립년월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한다. ** 벤처확인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3	사업공고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로부터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투자받지 못했다.	☐
4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투자받은 민간투자사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했다.	☐
5	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징수유예 포함)	☐
6	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
7	신청기업이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상태이다.	☐
8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다.	☐
9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신청제외 대상'에 하나 이상 해당한다.	☐

*** 신청 제외 대상이 추후 확인될 경우, 중도 사업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은 관련법에 의해 회수 조치됨**

사 업 계 획 서

작 성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인)

한 국 농 업 기 술 진 흥 원 귀중

Ⅰ 신청기업(대표자) 개요

1. 신청기업(대표자)의 인적 사항

*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

<table>
<tr><td rowspan="2">성 명</td><td>(한 글)</td><td colspan="2"></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한 자)</td><td colspan="2"></td><td>연 령</td><td colspan="2">만 세</td></tr>
<tr><td rowspan="4">학 력</td><td colspan="2">기 간</td><td rowspan="2">학교명</td><td rowspan="2">수학 상태</td><td rowspan="2">전공
(학 위)</td><td rowspan="2">기술자격
(분야, 등급)</td></tr>
<tr><td>부터</td><td>까지</td></tr>
<tr><td></td><td></td><td></td><td>졸업 수료 중퇴</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경 력</td><td colspan="2">기 간</td><td colspan="3">근 무 처</td><td rowspan="2">담당업무</td></tr>
<tr><td>부터</td><td>까지</td><td>근무처명</td><td>직위</td><td>주요제품</td></tr>
<tr><td>. .</td><td>.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td><td>.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td><td>.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td><td>.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관련 업종 총 근무 기간</td><td colspan="4">년 개월</td></tr>
<tr><td rowspan="2">기타</td><td colspan="2">연구 개발실</td><td colspan="4">□ 보유 □ 비보유</td></tr>
<tr><td colspan="2">생산 방식</td><td colspan="4">□ 직접생산 □ 위탁생산 □ 기타( )</td></tr>
</table>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등)

◦

◦

◦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단위 : 백만원)

개발과제 및 내용	근무처	신청자 역 할	실시기간	사업 규모 (소요자금)	자 금 제공처	사업화 현 황

* 제안한 창업아이템 내지 창업과제명과 관련 있는 (참여)개발과제는 관련 자료(학술논문, 특허명세서 등)를 첨부해 증빙해야 함

3.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연령	현소속 직위	최종학력			담당업무 (연락처)
			학교명	전공	학위	

II 기업 개요

1. 개요

<table>
<tr><td rowspan="2">회 사 명</td><td colspan="2" row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설 립 일</td><td colspan="2"></td></tr>
<tr><td>업 종</td><td colspan="2"></td><td>주 생산품</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매 출 액</td><td>2022</td><td>백만원</td><td rowspan="3">고 용 인 원</td><td>2022</td><td>명</td></tr>
<tr><td>2023</td><td>백만원</td><td>2023</td><td>명</td></tr>
<tr><td>2024</td><td>백만원</td><td>2024</td><td>명</td></tr>
<tr><td rowspan="4">투 자 실 적</td><td>창업~24년</td><td>백만원</td><td colspan="3">* 창업 이후 총 투자유치 금액 표기</td></tr>
<tr><td>2022</td><td>백만원</td><td colspan="3">* 대표 투자처 표기</td></tr>
<tr><td>2023</td><td>백만원</td><td colspan="3"></td></tr>
<tr><td>2024</td><td>백만원</td><td colspan="3"></td></tr>
<tr><td>사업장 주소</td><td colspan="5">(우편번호)</td></tr>
<tr><td>사업장 현황</td><td colspan="5">(자가, 임차) (공장등록, 미등록) 대지 : 평, 건평 : 평</td></tr>
<tr><td>기업 소개
(요약)</td><td colspan="5"></td></tr>
<tr><td>특기 사항
(창업 이후 기업의 특기사항 연혁 순으로 기재)</td><td colspan="5"></td></tr>
</table>

2. 주주 및 경영진 구성

(단위 : 백만원, %)

주주 구성				경영 · 기술진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대표자와의 관계	성명	나이	담당업무(직위)	학력 및 경력
					만 00세		
계							

3.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매출액은 증빙(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자료는 모두 제출 해야함. (주의) 증빙이 거짓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총자산, 총부채 등 재무제표가 미발급되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

Ⅲ 사업 계획 개요

사업화 과제명	*신청기업 일반현황의 '사업화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예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과채 한방 어린이 주스 생산, 판매)*

<table>
<tr><td>아이템명</td><td colspan="5">* 사업화 과제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명칭</td></tr>
<tr><td>규 격</td><td></td><td>생산규모</td><td></td><td>(예상)
가격</td><td></td></tr>
<tr><td>아이템 소개</td><td colspan="5">※ 동 사업을 통해 개발 및 고도화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의 핵심 기능 등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td></tr>
<tr><td rowspan="2">이미지</td><td colspan="3">※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td><td colspan="2"><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td></tr>
<tr><td>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td><td colspan="5">※ 사업아이템에 접목된 핵심기술과 이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작성</td></tr>
<tr><td rowspan="3">(현재 기준)
사업화
추진단계
및
추진현황</td><td>사업아이템 발굴
조사 및 기획</td><td>제품 및 생산
시설 설계</td><td>시제품
제작</td><td>기술·공정개선
상품화 개선</td><td>양산화</td><td>출시.판매 및
홍보마케팅</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현재 제품·기술·서비스의 사업단계를 체크(중복 가능)하고 관련 사업화 내용 및 현황을 기재
예) 연구개발,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중, 개발 완료, 고도화, 제품 출시 등</td></tr>
</table>

<table>
<tr><td>’25년
기술 및
제품의
개선 사항</td><td colspan="4">※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선사항(2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td></tr>
<tr><td>’25년
사업 계획</td><td colspan="4">※ 투자유치, 매출증가, 기술고도화, 판로개척 등 스케일업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현 추진단계를 토대로 2025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목표, 추진방안, 예상결과 등)</td></tr>
<tr><td rowspan="6">’25년
사업화
성과 목표
(정량 및
정성)</td><td rowspan="5">정
량</td><td colspan="2">기관 제시(필수)</td><td colspan="2">기업 제시(3건 이상 필수)</td></tr>
<tr><td>성과 지표</td><td>달성 목표</td><td>성과 지표</td><td>달성 목표</td></tr>
<tr><td>매출액 증가율(%)</td><td>30 * 고정목표</td><td>※ 성과지표 작성</td><td>※ 목표수치 작성</td></tr>
<tr><td>고용인원 증가(명)
※ ’24년 대비 ’25년 고용인원 증가를 의미</td><td rowspan="2">※ 목표수치 작성</td><td>※ 성과지표 작성</td><td>※ 목표수치 작성</td></tr>
<tr><td>※ 성과지표 작성</td><td>※ 목표수치 작성</td></tr>
<tr><td>투자유치(억)</td><td>※ 목표수치 작성</td><td>※ 성과지표 작성</td><td>※ 목표수치 작성</td></tr>
<tr><td>정
성</td><td colspan="4"></td></tr>
</table>

Ⅳ [상세] 사업 계획

1. 사업 경쟁력

1-1. 시장 경쟁력

※ 산업주기(개발, 성장, 성숙, 쇠퇴)상 해당 기업의 사업화 단계, 해당분야 시장 분석(시장규모, 전망). 해당기업 아이템의 시장점유율(현황·예측), 기술 및 아이템의 시장 선도 가능성 등

□ 산업 주기 및 위치

* 제품(서비스)의 단계별 개발, 성장, 성숙, 쇠퇴기로 볼 때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단계 기술

○

□ 사업아이템(또는 해당분야)의 시장규모 및 전망

○

□ 사업 아이템의 시장 점유 가능성

○

□ 사업 아이템의 시장 선도 가능성

○

1-2. 기술 경쟁력

※ 기술현황(이전·개발·보유 기술, 지재권 현황 등), 경쟁사 대비 차별성·우수성, 기술 완성도, 모방 난이도, 기술보호 노력 등 지원기업이 가진 기술의 경쟁력 기술

□ 경쟁사 대비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

○

-

□ 기술의 완성도 및 난이도 경쟁력

○

-

□ 보유 기술

○ 보유 기술(지식재산권) 현황

순번	지식재산권 번호	특허기술·지재권명	등록국가	등록자(기관)	등록일자
		국내, 해외특허, 국제인증 등 포함			

○ 등록사항 이외의 연구개발 현황

- 국내 및 국제협약 체결 현황(MOU 등)

1-3. 사업화 경쟁력

□ 기반 시설 보유 역량

※ 연구개발, 기술확보, 제품생산 등을 위한 보유시설의 역량을 기재

○ 기반시설 보유 역량

-

○ 연구 및 생산 시설 등 기반시설 보유 현황

연구시설· 생산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내용)	활용시기	구입 가격	구입 년도
0000						
0000						

□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 아이템과 관련한 판로개척 마케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역량 및 경쟁력 기재

○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점

-

○ 최근 3년간 마케팅을 위한 노력

추진 사항	추진 기간	세부 내용

□ 기타 기업역량

※ 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구성원의 역량, 시장 대처 능력, 창업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력사항 등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의 자체 역량을 기재

○ 경쟁 대처능력, 국내외 시장환경 유연성 대처능력

-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순번	파트너명	주요역량	주요 협력사항	비고
1	*00제약*		*공동연구개발*	*~'24.12*
2	*000*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확보*	*협력 예정*

1-4. 대표자·직원의 인적 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창업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

□ 직원 현황 및 역량(조직역량)

※ 연구개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역량 등

	성명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 분야	채용 년월	본사업 참여時 참여율 (%)
				학교	전공	최종 학위	취득 년도			
1										
	주요 경력									
2										
	주요 경력									
3										
	주요 경력									
4										
	주요 경력									
5										
	주요 경력									

1-5.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 내수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마트	2023.2.14.~2024.2.22.		○○○백만원
…			
…			

□ 글로벌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개*	*○○○, ○○○, ○○○*
…			
…			

□ 글로벌 진출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국제협약체결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건	*○○건*	*○○건*
…		
…		

□ 자금조달 실적

조달금액	조달방식	조달처
0000원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융자, 국고지원금(사업명)*	*기관명*
…		
…		

□ 기타(그 간의 실적)

2. 사업화 문제 인식

※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화 과제명 및 아이템과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및 내용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해결해야 할 과제 * 제품·서비스, 고객니즈, 시장·경쟁자 대비 개선 등 해결할 사항 기재

○ 제품·서비스

-

○ 고객의 니즈

-

○ 시장·경쟁자 대비 개선

-

3. 사업 고도화 계획

※ 사업화 과제를 개발(개선)하는데 인지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고도화 전략, 추진 내용, 일정 등 기재
※ 투자유치, 매출증가, 기술고도화, 판로개척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케일업 전략 수립

3-1. 사업 목표

□ 사업 목표

○

-

3-2.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25년~'27년, 3개년)

사업고도화 추진 전략 및 내용	2025년	1/4	
		2/4	
		3/4	
		4/4	
	2026년	1/2	
		2/2	
	2027년	1/2	
		2/2	

3-3. 사업화 과제의 고도화를 위한 '25년도 세부 계획

□ 사업추진 전략

○

-

□ 사업추진 내용(상세 계획)

○

-

3-4. ('25년) 사업추진 일정

구분	추진 계획	추진 일정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연구시설/장비 구축*																						
3	*제품개발 원재료 구입*																						
4	*기술개발, 시험분석*																						
5	*외주가공, 디자인개발*																						
6	*시제품개발*																						
7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8	*최종보고서 제출*																						

3-5.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국고지원금과 자부담금(현금, 현물)합산액)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신청사업의 공고문에 근거하여 작성)

<사업비 집행 기준>

1. (**인건비)**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의 합산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고용인력은 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현금, 현물)에서 기고용인력은 자부담금(현금, 현물)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
   - **(신규인력)**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협약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 한자 또는 예정자에 한함
   - **(기고용인력)**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에 한함(사업책임자 포함)

   ※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 참여기간(B) × 참여율(C)
2. **(재료비)**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의 합산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3. **(시설장비비, 공정개선비 및 용역비)** 사업비 집행 계획시 반드시 세부계획 제출 * <양식 4, 5> 참조
4. **(임차비)**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의 합산액)의 **20%(60백만원)**를 초과할수 없음
5. **(지급수수료)** 전문가컨설팅, 해외진출, 시험분석,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자료 번역, 기술이전 및 가치평가 수수료, 지식재산권 등
6.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구축, 포장지 및 홍보물제작, 디자인 개발 등
7. **(회계정산비)** 지정회계법인에 지급하는 국고지원금의 **1%** 고정지출 * 추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협약체결 이후 직접비와 간접비 간 사업비 변경 및 전용 불가
9. 현물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비로만 사용 가능

<현물 인정 기준>

1. **(인건비)** 창업기업이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 단,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한함
2. **(재료비)**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료, 시약, 사업화 관련 재료 등

   * 단, 협약일(예정) 4월 15일로부터 과거 1년('24.4.16.)~사업종료일 6개월전까지('25.6.30.) 구입한 재료에 대한 수량, 금액 등 증빙서류 보유에 한함
3. **(시설장비비)**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관련 기자재

   * 단, 협약일(예정)으로부터 과거 4년 이내('21.4.16.~) 구입 건에 한하여 인정함

   - 환산액 산정방법 : (장비 및 기자재 구입금액)/5*(사업개월/12개월)로 산정

※ 위의 사업비 집행 기준 및 현물 인정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총괄표 (매칭금액 한도 내에서 필요금액 수준으로 작성)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투자금 매칭금액, 최대 5억원) + 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 이상, 현금.현물)

비 목		산출 근거 내역	금액(천원)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비				
	공정개선비				*불가항목*
	용역비				*불가항목*
간접비	지급수수료				*불가항목*
	광고선전비				*불가항목*
	회계정산비	*고정비율(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국고지원금의 1%		*불가항목*
	기타				*불가항목*
합 계					

□ [국고지원금] 비목별 소요예산 상세 계획

○ 인건비

※ **국고지원금 인건비** : 해당 항목의 인건비는 자부담분의 인건비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신규 고용인력에 한해 지급 가능**

- **신규고용인력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종료일이내('25.12.31.)에 신규채용한 자**

(단위: 천원)

비목	인력 구분	채용 시기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합계 (A×B×C)	비고
인건비 (신규)	신규	*00.00.00*	*000*	*사원*	*3,500*	*9개월*	*30*	-	
	신규	*예정*	*000*	*대리*	*2,000*	*9개월*	*20*	*10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합 계									

※ 참여인력 당 참여기간은 최대 9개월, 참여율은 최대 100%를 넘을 수 없음

○ (인건비 외) 사업화 자금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상세 내역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직접비	재료비								
		소 계						천원	
	시설 장비비								
		소 계						천원	
	공정 개선비								
		소 계						천원	
	용역비								
		소 계						천원	
	직접비 소계							천원	
간접비	지급 수수료								
		소 계						천원	
	임차비								
		소 계						천원	
	광고 선전비								
		소 계						천원	
	회계 정산비	회계정산비	건	건	1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소 계						천원	
	기타								
		소 계						천원	
	간접비 소계							천원	
국고지원금 합계								천원	

□ [자부담 : 현금+현물] 소요예산 상세 계획

○ 인건비 소요명세

※ **신규고용인력은 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현금, 현물)에서 기고용인력은 자부담금(현금, 현물)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

ex) 자부담금 90백만원(현금 30백만원, 현물 60백만원)인 경우, 현금 인건비 최대 30백만원, 현물 인건비 최대 60백만원 동시 계상 가능(단, 인건비는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 합산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고용인력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이전부터 사업종료일이내에 신규채용한 자**

※ 월급여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함.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참여율은 정수만 인정(소수점이하 불인정), 합계는 정확해야함(반올림 불인정),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기재되어야 함

(단위: 천원)

비목	인력구분	현고용여부	고용일자	성명	직위	월급여(A)	참여기간(B)	참여율(%)(C)	합 계 (A×B×C)		
									현금	현물	계
인건비	기존	*고용*	*00.00.00*	*000*	*과장*	*3,500*	*8개월*	*30*	*-*	*0000*	*0000*
	신규	*예정*	*00.00.00*	*000*	*대리*	*2,000*	*8개월*	*20*	*0000*	*-*	*0000*
합 계											

- 인건비 외 소요명세

※ 현물 산정 가능 비목 : 재료비, 시설장비비에 한함

(단위: 천원)

비목		환산액		산출내역	비고
비목	품명	현금	현물		
재료비					
소 계					

비목		환산액		산출내역	비고
비목	품명	현금	현물		
시설장비비					
소 계					
현금·현물 소 계					
인건비 외 자부담(현금·현물) 합계					

4. 스케일업 전략

※ 기술개발, 매출증가, 투자유치, 공동연구개발, 기타 협업사례 구축을 통한 기술판매, 제품개발, 판로 확보 등의 스케일업 전략 기술

4-1. ('25년 사업 성과목표)

※ 사업 성과 목표는 사업최종보고 및 평가시 정량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기관제시 목표 : 필수 설정 항목, 매출 및 투자금액의 경우 금액 또는 전년대비 %로 기입
※ 기업제시 목표 : 3건 이상 목표설정(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업 및 사업특성에 맞게 설정)

	성과 지표 및 목표			
기관 제시 (필수)	기업 매출액	투자유치	고용인원 증가	
	(전년대비) 30%(고정)	백만원	명	
기업 제시	*(예시)지원제품 매출*	*(예시)시제품개발*	*(예시)특허출원 및 등록*	(목표명)
	백만원/%	*건*	*건*	

4-2. (기술개발)

□ 추진 전략 및 내용

- *주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지재권 등록, 논문등재,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과 관련한 내용*

4-3. (매출)

□ 내수시장 확보방안

○

-

※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 내수시장 매출예상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000	*2000.0.0. ~ 2000.0.0.*		*○○○천원*
…			

□ 해외시장 진출방안

○

-

※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 해외시장 예상 매출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 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00마트	*2000.0.0. ~ 2000.0.0.*		*000천원*
…			

4-4. (투자)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

□ 투자유치 방안 및 계획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4-5. (신규고용)

□ 추가 인력 고용계획 : 총 00명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시기	청년 여부 (만 39세 이하)
1	*종자개발*	*000전공 학사 이상*	*'25.2*	*○ / X*
2	*해외 영업(국가명)*	*해당 국가 현지회화가 능통한 자*		

4-6. (기타) *기업 특성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할 경우에만 사용(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

□

기타 참고자료

제품(기술, 서비스) 참고 이미지, 인증 및 상장 등 기타서류 목록
2페이지까지 사용가능

- 2페이지 초과 시에 초과분량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기타서류는 선택제출사항이므로 목록만 요약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제 자료는 별첨으로 압축하여 홈페이지 신청 시에 업로드 해야 함

[양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KO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2025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부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투자지원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5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선정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중

[양식 4] 용역/공정개선 수행계획서

2025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용역/공정개선] 수행계획서

<table>
<tr><td rowspan="2">구 분(√)</td><td>용역</td><td>☐</td><td colspan="3" rowspan="2">* 용역비 또는 공정개선비 집행 시 수행계획 건 모두 작성</td></tr>
<tr><td>공정개선</td><td>☐</td></tr>
<tr><td>수행 계획명</td><td colspan="5"></td></tr>
<tr><td>금액(원)</td><td colspan="2"></td><td>수행 기간</td><td colspan="2">계약일 ~ 2000.00.00</td></tr>
<tr><td>수행 구분</td><td colspan="5">☐ 위탁형 ☐ 공동형 ☐ 자문형 ☐ 자체수행형</td></tr>
<tr><td>수행 종류</td><td colspan="5">☐ 조사·연구 ☐ 공사·설비·시스템 ☐ 행사
☐ 홍보·마케팅 ☐ 공정개선 ☐ 기타( )</td></tr>
<tr><td>목표</td><td colspan="5">○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개선 목표 또는 주요목표
○</td></tr>
<tr><td>추진 목적
및 필요성</td><td colspan="5">○
○</td></tr>
<tr><td>개요 및 내용</td><td colspan="5">○ 사업 세부 계획 및 내용 등
○</td></tr>
<tr><td>결과 활용 방안</td><td colspan="5">○</td></tr>
<tr><td>(용역 時)
업체 선정 방법</td><td colspan="5">○</td></tr>
<tr><td>기타 사항</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업 책임자
(지원사업 신청기업)</td><td colspan="2">소 속</td><td>직 책(급)</td><td colspan="2">성 명</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able>

[양식 5] 시설장비 도입계획서

2025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시설장비 도입계획서

<table>
<tr><td rowspan="2">구 분(√)</td><td>시설</td><td>☐</td><td colspan="3" rowspan="2">* 1천만원 이상 구입건 모두 작성</td></tr>
<tr><td>장비</td><td>☐</td></tr>
<tr><td>도입 시설·장비명</td><td colspan="5"></td></tr>
<tr><td>금액</td><td colspan="2">천원</td><td>도입시기</td><td colspan="2">2000.00.00</td></tr>
<tr><td>취득방법</td><td colspan="5">[내/외자 구매],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으로 기재</td></tr>
<tr><td>도입 목적
및 필요성</td><td colspan="5">(목적)
○
(필요성)
○</td></tr>
<tr><td>용도 및 주요 사양</td><td colspan="5">(용도)
○
(주요 사양)
○</td></tr>
<tr><td>도입 효과</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업 책임자
(지원사업 신청기업)</td><td colspan="2">소 속</td><td colspan="2">직 책(급)</td><td>성 명</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able>